

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2020. 5. .

제 안 자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7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도모를 위하여 수탁단체(횡계2리 영농조합법인)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, 이에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, 제19조
-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의 2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

3. 위탁운영 목적

-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는 지역특산품(황태, 시래기, 나물 등)을 활용한 음식점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「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」을 통해 조성된 시설로
- 시설구축의 목적 실현과 시설활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

4. 위탁개요

- 시설명 : 황계2리 지역활력센터(음식점동)
- 시설개요 : 일반철골구조 지상2층 건물(연면적 213.49㎡)
※ 토지 마을소유
- 위치 : 대관령면 황계2리 141-5외 2필지
- 대상사무 : 대관령황태, 시래기, 나물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음식판매 등 지역활력센터(음식점동) 운영관리사무
- 위탁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
- 위탁방법 : 수의계약
- 위탁단체 : 황계2리 영농조합법인
- 위탁금액 : 3,698천원

5. 기대효과

- 365일 무휴 운영시 연인원 1,095명의 고용창출 및 KT 사회공헌 사업으로 조성된 IT관광안내소, 카페, 5G 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약 15,000명 유치, 매출 1억원 예상
-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, 인구유입 기대

6. 관련자료

- 관련법령 1부. 끝.

소관 관.과.소		행정과
입 안 자	관.과.소장 직위.성명	행정과장 김 명 기
	담 당 직위.성명 (전 화)	전산정보담당 신 병 진 (330-2462)

관련법령 발췌

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“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8.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20조의2(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)

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」 제2조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
2.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

④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